

## 보도설명자료 (17.2.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"P&G 기저귀 유해 여부, 프랑스 대사관에 물어보는 정부"

(17.2.7. 조선일보)

### 1. 기사내용

- 국내에는 다이옥신·살충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, 국표원이 관련 내용을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
- 유사 제품에 대한 관리 부처 상이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다이옥신의 관리는 국제 협약\*을 반영하여 제품별 배출기준보다는 배출시설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러한 이유로 EU에서도 제품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임

\* 국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도 스톡홀름 협약을 반영하여 배출시설별 배출기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음

- 산업부와 식약처\*는 위생용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유아용 기저귀와 성인용 기저귀를 식약처로 안전관리 이관하기로 합의(16.7월)

\* 식약처가 여성용 생리대를 既관리

- 현재 국회에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안이 상정중인 바, 법 통과 후 기저귀를 식약처로 이관하여 동법에 따라 관리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

배진석 과 장 (043-870-5454)

지민호 연구사 (043-870-5459)